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2. 24 선고 2020나120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2. 24 선고 2020나1208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위종욱

변론 종결 2020. 10. 29.

판결 선고 2020. 12. 2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995,63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6.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0. 10. 27.자 준비서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을 30,995,630원에서 48,995,630원으로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995,63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6.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0. 10. 27.자 준비서면으로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30,995,630원, 대여금반환청구로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10. 27.자 준비서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을 48,995,630원으로 확장하면서 대여금반환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매매대금 1,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으로, 제2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매매대금 1,340,000,000원"을 "매매대금 중 1,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다음에 "4) 원고가 위 2), 3)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은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입·출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I 상가의 매매대금 9억 4,600만 원, I 상가 매입으로 인한 세금과 법무사비용 합계 54,559,000원, E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445,370원, E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D에 대한 채무변제 4,500만 원, 피고에 대한 증여액 500만 원과 D, K에 대한 증여액 500만 원, C에게 지급한 1억 7,200만원 등 합계 1,291,004,370원의 지급만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을 지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8,995,630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95,6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I 상가의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이 9억 4,6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I 상가의 매매대금 11억 4,0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 1억 7,600만 원을 제외한 9억 6,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원고는 소장에서부터 2020. 4. 28.자 준비서면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지시한 I 상가 매매대금은 9억 6,400만 원으로 인정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지시한 내역에 대하여 ㉠ I 상가 매매대금으로 9억 6,400만 원, ㉡ 2011. 8. 1. 원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 ㉢ I 상가 매입으로 인한 비용 54,559,000원, ㉣ C에게 지급한 1억 7,200만 원, ㉤ 피고에게 증여한 돈 500만 원, ㉥ D에게 이체한 6,250만 원, ㉦ 원고가 2011. 9. 30.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2011. 10. 26. 상환(상계해지)된 6,000만 원, ㉧ D, K에게 지급을 지시하였으나 D, K이 피고에게 준 약 191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내역 중 ㉠ 내지 ㉥은 위 ①과 같이 인정되거나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미만이며, ㉧, ㉨은 갑 제4, 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지급 지시 내역의 합계액은 13억 5,996만 9,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3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구

판사이재환

판사전경옥